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 등
제출 요구 → 경영·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하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 〉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4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23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
3. 회부연월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과 행정 운영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수 전제조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류 등의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소명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류 등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동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 정부의 부처와 공공기관은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
부를 방지하고자 이 법에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와 사진·영상
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신
설하여 정부의 자료제출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부의 투명
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7
호다목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 ----- -----. -----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 6. (현행과 같음)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	

현행	개정안
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	

현행	개정안
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현행	개정안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신 설> *관련 조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7.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와 사진·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

현행	개정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 공개의 청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회법」 제128조는 국회(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가 정부, 행정기관 등에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10일(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¹⁾

- 1)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함)은 보고, 서류등의 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³⁾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회의록⁵⁾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제415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회의록(2024.6.25.)

제417회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2024.8.20.)

제417회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2024.8.26.)

제418회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2024.9.4.)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정보,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⁶⁾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에 따른 비공개 사항⁷⁾에 해당함을 사유로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⁸⁾

- 6)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법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라. 그 밖에 급부·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⑧ (생략)
- 7) 「공무원 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8) [참고 자료]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14-0411, 2014.9.17. 회신)

1. 질의요지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지?

2. 회답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의 제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서류등 제출 요구 시에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는 사유로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에 불응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대하여 관련된 규정을 두는 경우, 다른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3. 이유 (생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일부 발췌)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음.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음.

둘째,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⁹⁾¹⁰⁾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 등과는 규율 대상에 차이가 있어 보임. 「정보공개법」 제9조도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전제로 하여 해당 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조문에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를 개정하여, 법 적용에 있어 「국회증언감정법」이 우선함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¹¹⁾도 발의되어 있는바, 「국회증언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주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권리 및 청구의 방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 결정,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구제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성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보공개 원칙)	제4조(적용 범위)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3장 정보공개 절차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0조(정보공개 청구방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제14조(부분 공개)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17조(비용 부담)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제18조(이의신청)	제19조(행정심판)
	제20조(행정소송)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5장 정보공개 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제도 총괄 등)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제26조(국회에의 보고)	제27조(위임규정)
	제28조(신분보장)	제29조(기간의 계산)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증언감정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바, 「정보공개법」에 개정안의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02)6788-5339

현행	개정안
제2조(중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서류 등의 제출 또는 중인출석 등의 의무) ----- ----- ----- ----- ----- <u>「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u> -----.

– 13 –